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211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OOOO㈜
임직원	前대표이사, 前담당임원
외부감사인	☆☆회계법인

2. 조치내용

< 금감원 원안 >

○ OOOO㈜
-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72.7백만원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- 감사인지정 3년
- 해임권고 상당(△△△)

○ 前대표이사 ◆◆◆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
○ 前담당임원 △△△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
○ ☆☆회계법인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%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

○ 공인회계사 ◇◇◇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
- 주권상장·지정회사·대형비상장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12시간

○ 공인회계사 □□□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
- 주권상장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16시간

< 수정심의·의결 >

○ OOOO㈜
-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72.7백만원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- 감사인지정 3년
- 해임권고 상당(△△△)

○ 前대표이사 ◆◆◆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
○ 前담당임원 △△△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
○ ☆☆회계법인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%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

○ 공인회계사 ◇◇◇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
- 주권상장·지정회사·대형비상장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12시간

○ 공인회계사 □□□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
- 주권상장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16시간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< OOOO㈜ >

○ **매출 과대계상 등**

- 회사는 미인도청구약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, 무역조건에 따른 통제 이전 시점이 도래하지 않는 등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수익을 인식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

< ☆☆회계법인 >

○ **매출 과대계상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**

- 감사인은 미인도청구약정의 통제 이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지 않는 등 미인도청구약정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○ **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**

-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는 그 이후 도래하는 연속 3개 사업연도에 대해 당해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함

나. 근거법규

○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 등